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가단6400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엔에이치테크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 종결 2018. 5. 2.

판결 선고 2018. 6.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21,133원과 그 중 80,693,021원에 대하여는 2017.2.22.부터, 152,233,4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각 2017. 9. 10.까지는 연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21,133원과 그 중 80,693,021원에 대하여는 2017. 2. 22.부터, 152,233,4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7. 9. 10.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업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수급사업자인 피고 A 주식회사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8항(제10항의 오기로 보인다)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사업자인 참가인은 위 조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인우

7

청 구 원 인

1. 본 건 보험계약자인 [A] (주) {이하 피고회사라 함}는 소외 영진종합건설(주), (주)엔에이치테크 {이하 피보험자들이라 함} 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선금금(1차중도금), 계약보증금 지급 보증의 담보로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2건의 이행(선금금),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음.

보 증 보 험 계 약 내 용

순번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1	A [주]	C	영진종합건설(주)	금 143,000,000원	2016. 04. 19. ~ 2017. 02. 15.
2	A [주]	D	(주)엔에이치테크	금 152,233,400원	2016. 05. 30. ~ 2016. 12. 31.

2.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는 피보험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각 약정하였음.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분 송달일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연 15%를 적용함.)
3. 피고 [B] 는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전부를 보험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 하였음.
4. 그 후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들은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1번 계약에 대하여 2016. 11. 23. 금 80,693,021원을, 2번 계약에 대하여 2017. 01. 26. 금 152,233,4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음.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1번 계약에 대하여 통 지급보험금 80,693,021원 및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2017. 02. 21. 까지의 지연손해금 1,591,752원의 합계금 82,284,773원과 위 지급보험금 에 대한 2017. 02. 22.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위 2번 계약에 대하여 통 지급보험금 152,233,400원 및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2017. 04. 26. 까지의 지연손해금 3,002,980원의 합계금 155,236,380원과 위 지급보험금에 대한 2017. 04. 27.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피고들과 약정한 합의 관할에 의거 귀원에 본 소를 제기함.

8

